

수입 명세서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|
| 귀속연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|  |
| 1. 공익단체<br>인적 사항 | ① 단 체 명           |  | ② 대 표 자 |  |
|                  | ③ 고유번호            |  | ④ 전화번호  |  |
|                  | ⑤ 비영리민간단체<br>등록번호 |  | ⑥ 핸드 폰  |  |
|                  | ⑦ 지 정 일           |  | ⑧ 소 재 지 |  |

2. 수입명세

(단위 : 원)

| ⑨ 회 비 |      | ⑩ 후 원 금 |      | ⑪ 보조금 · 지원금 |              | ⑫ 기타수입<br>(수익사업 등) | ⑬ 이월금 | ⑭ 차입금 | ⑮ 총 계 |
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개인    | 법인 등 | 개인      | 법인 등 | 국가 ·<br>지자체 | 다른 공익<br>법인등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
3. 수입(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제외) 중 개인의 회비·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(%): (        %)

4. 통장 보유 현황

|         |  |  |  |  |  |
|---------|--|--|--|--|--|
| ⑯ 구 분   |  |  |  |  |  |
| ⑰ 계좌번호  |  |  |  |  |  |
| ⑱ 계좌명의자 |  |  |  |  |  |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공익단체 (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- 이 서식은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⑦ 지정일란: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날을 적습니다.
- 수입(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) 중 개인의 회비·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(%):란: 공익단체의 ⑮ 총계금액에서 ⑪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⑬ 이월금 ⑭ 차입금 수입을 뺀 금액 중 개인으로부터 받은 회비·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.
- ⑯ 구분란: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.